

의안번호	2204082
의 퇴 인	서왕진 의원
회 답 일	2024. 11. 11.
추 계 번호	24F38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기술 관련 R&D 세액공제 및 녹색기술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인상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녹색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단, 적용기한 연장 대상은 녹색기술 관련 사업 등을 하는 협동조합 등으로 한정	
2	안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녹색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 적용 － 공제율(%): (중소기업) 50, (중견 및 대기업) 40 ※ 단, 녹색기술 연구개발비가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동일하게 추가공제율 적용(최대 10%p)	
3	안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현행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인수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녹색기술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에도 적용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 － 공제한도: 총인수금액 또는 5천억원 중 작은 값 － 적용기한: 2025.12.31.	
4	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녹색기술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인상하여 적용하고, 녹색기술 관련 중고품을 공제대상에 포함 － 공제율(%): (현행) 중소기업 10~25, 중견기업 5~15, 대기업 1~15 → (개정안) 중소기업 35, 중견기업 25, 대기업 25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2	안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녹색기술 연구개발비 및 녹색기술시설에 대한 설비투자 등에 다른 기술 및 설비투자와 구분하여 인상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녹색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등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녹색기술 관련 해외법인 인수시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안 제7조 등)
- 개정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기한을 녹색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하여 현행 2025년말에서 2030년말로 연장(안 제7조)
 -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중소기업의 본점 소재지·업종·기업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하는 제도
 - － 감면율(%): 업종별·본점 소재지별·기업규모별로 5~30
 - ※ 비수도권에서 도소매업, 의료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5
 - 도소매업, 의료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10
 - 비수도권에서 도소매업, 의료업 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5
 - 수도권내 도소매업, 의료업 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 20
 - 비수도권에서 도소매업, 의료업 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 30
 -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 단, 적용기한 연장은 녹색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등에 한정
 - 개정안은 현행 일반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로 구분되어 공제가 적용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하 'R&D 세액공제')에 녹색기술 연구개발비를 구분하여 다른 기술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 적용(안 제10조)
 - － 개정안에 따른 녹색기술 연구개발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다음의 기술로 규정
 ※ 녹색기술: 기후변화대응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
 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

[표 1] R&D 세액공제의 기술별·기업규모별 공제율 비교

(단위: %)

	현행			개정안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녹색기술
중소기업	25	30	40	50+최대 10 ¹⁾
중견기업	8	20	30	40+최대 10
대기업	최대 2	20	30	40+최대 10

주: 1) 수입금액 대비 녹색기술 연구개발비 비중에 따라 최대 10%p까지 공제율 가산

- 개정안은 현행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국가전략기술 관련업체인 해외기업
 인수시 인수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에 녹색기술 관련업체를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안 제13조의3)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
 - ※ 공제한도(건당): 총인수금액과 5천억원 중 낮은 금액
 - 적용기한: 2025.12.31.
- 개정안은 현행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구분되어 공제가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녹색기술시설을 구분하여 다른
 기술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 적용하고, 공제대상에 녹색기술 관련
 중고품을 포함(안 제24조)

[표 2]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술별·기업규모별 공제율 비교

(단위: %)

	현행(당기분)			개정안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녹색기술 시설
중소기업	10	12	25	35
중견기업	5	6	15	25
대기업	1	3	15	25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녹색기술의 범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이 녹색기술에 포함될지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

- 개정안에 따라 녹색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동 기술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움
 -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및 [별표 7의2]에는 녹색기술과 유사한 탄소중립 기술 및 수소기술 등의 구체적인 기술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기술의 녹색기술 포함여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

[표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 탄소중립 기술범위

기술종류		내용
탄소 포집·활용·저장		연소 전후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순산소 연소기술 및 저가 산소 대량 제조 기술,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탐사기술, 이산화탄소 수송·저장기술, 산업 부생가스 전환기술,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수소	신성장·원천기술	부생수소 생산기술,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 핵심부품 설계 제조기술,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적하역 및 증발가스 처리기술, 암모니아 발전 기술, 산업용 수소 보일러 및 연소기 설계 제작 기술
	국가전략기술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장치 제조기술, 수소충전소의 설비부품 제조기술, 수소차용 연료 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신재생에너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 등 설계 및 제조 기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소재 기술, 페로브스카이트 등 태양전지 핵심소재 제조 및 대면적화 기술, 풍력 에너지 생산 기술, 지열 에너지 회수 및 저장, 발전 기술,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폐기물 액화·가스화 기술, 미활용 폐열을 활용한 발전기술 등
산업공정		합수소가스 활용 고로취입기술, 복합취련전로 활용 스크랩 다량 사용기술,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생산기술, 산화칼슘 함유 비탄산염 산업부산물의 시멘트 원료화 기술, 이산화탄소 저감 시멘트 생산을 위한 연료 대체기술, 시멘트 소성공정 유연탄 대체 기술,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기술 등
에너지·효율 수송		지능형 전력·배전계통 설계 및 제조기술, 지능형 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기술, 지능형 검침인프라 설계 및 제조기술, 데이터센터 냉방 공조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극저온 액체 저장 및 이송용 펌프 설계·제조기술, 히트 펌프 적용 온도 범위 확대 및 효율 향상 기술, 선박용 디젤엔진 제조 기술 등

□ 또한, 녹색기술 관련 협동조합 등의 소득 등 과세관련 자료, 내국법인의 녹색기술 관련 해외법인 인수 현황, 기업규모별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투자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개정안에 따른 공제규모를 추정하여야 하나,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녹색기술에 대한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용 및 사업화시설 투자액 현황, 공제 규모 등 정보가 필요하나,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녹색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액과 개정안에 따른 공제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 국세청에 따르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술별(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구분은 가능하나, 세부적인 분야별 공제실적은 구분되지 않음
 - － 참고로, 2023년 신고기준 기술별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잠정치)은 다음과 같음

[표 4] 기술별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 2023년 신고기준(잠정치)
(단위: 억원)

구분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23,760	9,492	11,968
통합투자세액공제	10,332	38	7,432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 또한, 향후 개정안에 따른 해당 공제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소득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현황, 녹색기술 관련 해외법인 인수현황 등 정보 등이 필요하나,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녹색기술 관련 해외기업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등의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박정환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정환	02-6788-4835	jhpark83@assembly.go.kr